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913호

「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주택법」 개정으로 '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구조 사후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조사방법,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, 마감공사의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·도장공사를 구분하며, 도장공사의 세부공사 용어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미세균열·망상균열·들뜸·박리·박락 등 안전상·기능상·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미장공사 하자로, 도막 갈라짐·변색·들뜸·박락·탈락 등 안전상·기능상·미관상 지장을

- 초래하는 경우는 도장공사 하자로 구분함(안 제9조제1항, 제2항)
- 나. 바닥구조의 구성층 두께, 측면 완충재, 재료의 품질이 설계도서 등에 부족하거나 다른 경우 시공하자로 보도록 하자판정기준 신설(안 제35조제2항)
- 다. 바닥구조의 구성층 두께 5개소 코어를 채취하여 평균값으로 두께 측정, 측면 완충재는 걸레받이 제거 후 시공상태 육안 확인, 재료별 품질은 시공 당시 품질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조사방법을 신설함(안 제72조제2항)
- 라. 하자부분에 대한 바닥 철거비와 재시공비용을 합산하여 하자 보수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함(안 제115조제2항, 별표 제17호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주택 건설공급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

-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
건설공급과(☎ 044-201-3378, fax 044-201-5684)
-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
행정예고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(전화 :
044-201-337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
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
바랍니다.